

## 1. 개정이유

개정 「아동복지법」(법률 제21108호, 2026. 5. 12. 시행) 등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을 하고,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보호조치 시 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때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요건 규정(제10조의2 신설)
- 나.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(안 제11조의5제2항)
- 다. 아동권리보장원장이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 규정(안 제14조 및 별지 제25호 서식 신설)
- 라.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을 규정(안 제19조)하고, 향후 제도 폐지 예정으로 신규지정이 금지된 ‘소년소녀가정’을 대상에서 삭제함
- 마. 연차보고서의 내용별 작성 대상 아동,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29조의2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- 라. 기     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장애 분야 전문인력의 추천)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법 제15조제1항후단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추천할 수 있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36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질 것
  2.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
- 제11조의5제2항 중 “아동권리보장원”을 “국가아동권리보장원”으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)①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 서식의 법률상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장원의 장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,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보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,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법률구조법인 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 업무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장원의 장은 법률상담 업무 수행을 요청하는 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에 법률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법률상담 업무의 수행을 요청받은 기관은 신청인에 대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보장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법률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, 업무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19조의 제목 “(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등)”을 “(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산형성지원사업”을 “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2(연차보고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(이하 이 조에서 “연차보고서”라

한다)를 작성하기 위하여 보장원, 아동복지에 관한 인적·물적 자원을 갖춘 연구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차보고서를 아동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내용에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하고,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 신 설 &gt;</p>	<p><u>제10조의2(장애 분야 전문인력의 추천)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법 제15조제1항후단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추천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36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질 것</p> <p>2.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 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</p>
<p>제11조의5(퇴소조치 등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“친권자,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친권자, 후견인, 아동복지시설의 장,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<u>아동권리보장원</u>(이하 “보장원”이라 한다)의 장,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(이하 “아동보호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을 말한다.</p>	<p>제11조의5(퇴소조치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국가아동</u> <u>권리보장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
< 신 설 >

제14조(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

절차 등) ①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 서식의 법률상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장원의 장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,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보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,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법률구조법인 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 업무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장원의 장은 법률상담 업무 수행을 요청하는 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에 법률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법률상담 업무의 수행을 요청받은 기관은 신

	<p><u>청인에 대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⑤ 보장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법률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, 업무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</u></p>
<p><u>제19조(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등)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.</u></p>	<p><u>제19조(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등) ① -----</u>  <u>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</u>  <u>-----</u>  <u>-----.</u></p>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<u>소년소녀가정의 아동</u>	<u>&lt;삭 제&gt;</u>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제29조의2(연차보고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</u>

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(이하 이 조에서 “연차보고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기 위하여 보장원, 아동복지에 관한 인적·물적 자원을 갖춘 연구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차보고서를 아동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내용에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**별지**

**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[별지 제25호 서식]**

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25호서식]

**법률상담 지원 신청서**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
신청인	성명 (법인·단체명)			생년월일	
	주소(소재지)			사업자(법인·단체) 등록번호	
	전화번호			전자우편주소	
법률상담 지원 신청내용	신청취지 및 이유				
	신청 내용				

「아동복지법」 제2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법률상담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

첨부서류	관련 서류 첨부
------	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#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본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,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개인정보를 수집, 이용·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처리절차

